

| | |
|------|---------------|
| 문서번호 | 청소행정과-25885 |
| 결재일자 | 2015. 11. 30. |
| 공개여부 | 비공개(5) |
| 방침번호 | 구청장 방침 제585호 |

| 주무관 | 재활용팀장 | 청소행정과장 | 주민생활국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
| | | | | | |
| 협 조 | 재무과장 | | | | |
| | 계약팀장 | | | | |

- 2016년 안정적 처리를 위한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선정계획



성 동 구
[청소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검 토 여 부 |
|--|--|
| 사 업 구 분 |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
|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 기 타 고 려 사 항 | 일 자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
| 타자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언 론 홍 보 계 획 |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type="checkbox"/>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
| <p>※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 |

- 2016년 안정적 처리를 위한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선정계획

2015년도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운송 업체 연간단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도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2 추진 방향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충분한 처리능력 확보
- 음폐수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업체 우선 선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유도

3 201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운송·처리 계약업체 현황 (2015.10 기준)

| 구분 | 기관 (업체명) | 계약방법 | 계약기간 | 연처리량 (톤) | 연처리비 (천원) | 반입가산금 | 총지출액 (톤당처리비) |
|-----------------|--------------|--------------|-----------------------------|-------------|--------------|---------|----------------------------------|
| 음식물 처리 업체 | 강동구 (나엔) | 자치단체 간 협약 | 2015. 1. 1.~ 2015.12.31. | 17,749 | 1,651,287 | 115,372 | 1,766,659 (99,536원) |
| | 송파구 (리클린) | 자치단체 간 협약 | 2015. 1. 1.~ 2015.12.31. | 5,927 | 696,895 | 48,779 | 745,674 (125,810원) |
| | 총 계 | | | 23,676 | 2,348,182 | 164,151 | 2,512,333 (평균106,113원) |
| 운송 업체 | 고려도시 개발 | 제한경쟁 입찰 | 2015. 2. 1.~ 2015.1. 31. | 23,676 | 238,897 | | 238,896 (99,206원) |
| 오폐수 처리업체 | 무한환경 | 수의계약 | 2015. 2. 1.~ 2015.12.31. | 1,160 | 9,861 | | 9,861 (8,501원) |
| 총 계 | | | | | | | 2,761,090 |

4 201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개요

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운송·처리 업체 선정

- 계약기간: 2016. 1. 1. ~ 2016. 12. 31.
- 협약기관: 강동구(나엔), 송파구(리클린)
- 계약업체수: 3개 업체 (처리 2개소, 운송 1개소)
- 계약물량: 연간 24,000톤(80톤/일)
- 계약방법
 - 처리업체: 자치단체간 일반협약(성동구 ↔ 강동구·송파구)
 - 운송업체: 제한경쟁입찰

나.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오폐수운송 업체 선정

- 계약기간: 2016. 1. 1. ~ 2016. 12. 31.
- 계약업체수: 1개 업체
- 계약물량: 1,200톤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오폐수 운송비 톤당 예정단가: 11,900원

5 추진 계획

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재협약

■ 강동구 음식물사료화시설 - (주)나엔

- 계약기간: 2016. 1. 1 ~ 2016. 12. 31
- 계약물량: 60톤/일

● **처리단가 현황(원/톤)**

| 구 분 | 2015년 | 2016년 | 증 감 | 비 고 |
|-------|----------------------|----------------------|---------|-----|
| 계 | 99,410원 | 102,000원 | 증2,590원 | |
| 처리비 | 95,840원 ~ 92,910원 | 98,000원 ~ 95,000원 | 증2,090원 | |
| 반입가산금 | 6,500원 | 7,000원 | 증500원 | |

● **계약방법: 자치단체간 일반협약(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

■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주)리클린**

● **계약기간: 2016. 1. 1 ~ 2016. 12. 31**

● **계약물량: 20톤/일**

● **처리단가 현황(원/톤)**

| 구 분 | 2015년 | 2016년 | 증 감 | 비 고 |
|-----|----------|----------|---------|-----|
| 계 | 125,810원 | 118,021원 | 감7,789원 | |
| 처리비 | 117,580원 | 110,300원 | 감7,280원 | |
| 반입비 | 8,230원 | 7,721원 | 감509원 | |

● **계약방법: 자치단체 간 일반협약(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

■ **공공시설 계약사유**

● **강동·송파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공공처리 시설로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며 근거리로 수송비가 절감됨.**

▷ 처리시설 2개소 중 1개 시설이 고장 등 반입 불가 시 즉시 대체 처리 가능.

▷ 공공처리시설(나엔,리클린)과 민간처리시설 처리비를 비교한 결과 공공시설과 계약 시 처리비 절감

· 공공처리시설(나엔) 최저 처리비: 95,000원

· 민간처리시설 최저 처리비: 112,000원

▷ 강동구(나엔)의 경우 변동단가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처리단가가 산정되어 반입량이 증가 될수록 예산절감 가능

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운송업체 제한경쟁입찰 선정

- 선정업체수: 1개 업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서울)
- 자격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를 필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로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을 두고 있는 자

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오폐수 운송업체 수의계약

- 선정업체수: 1개 업체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사유: 중간집하장에서 배출된 오폐수 배출량(월 100톤)이 소량이고 처리비가 적어 입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폐수 운송업체를 시장조사 후 운송비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처리방법
 - 중간집하장에 적치된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중량물재생센터까지 운송
- 자격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를 필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밀폐된 탱크로리 차량 보유 업체

6 추진 일정

- 2015. 12. 05. ~ 12. 15: 위탁 처리 협약 체결
- 2015. 11. 27: 음식물류폐기물 및 오폐수 운송용역 계약심사의뢰(감사담당관)
- 2015. 12. 05: 음식물류폐기물 운송 입찰공고의뢰(재무과)
- 2015. 12. 12: 운송 업체 위탁 계약

7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금3,318,126천 원(금삼십삼억일천팔백일십이만육천원 정)
- 산출내역
 - ▷ 위탁 처리비: 3,003,126천 원
 - 강동구(반입비포함): 102,000원/톤 × 22,500톤 = 2,295,000천 원
 - 송파구(반입비포함): 118,021원/톤 × 6,000톤 = 708,126천 원
 - ▷ 위탁 운송비: 300,000천 원
 - 12,500원/톤 × 24,000톤 = 300,000천 원(1개 운송업체)
 - ▷ 오페수 운송비: 15,000천 원
 - 12,500원/톤 × 1,200톤 = 15,000천 원(1개 운송업체)
- 예산과목: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유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중략)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제25조**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폐기물관리법제29조**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폐기물관리법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폐기물관리법제4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